

노인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

의안 번호	1408
----------	------

제안년월일 : 2016년 9월 5일

제안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1. 주 문

- 서울시 도시철도는 일일 670만명 이상을 수송하는 명실상부한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나, 이러한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무임손실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무임수송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이용객의 14%에 이르고 노인 인구는 2015년 12.3%에서 2030년 23.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와 같이 도시철도 운송기관이 무임수송 운영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임
- 지하철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정부가 제정한 법령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손실보전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국가가 운영하는 국철은 무임손실의 60~70%를 정부로부터 직접 보전 받고 있어 정부정책의 형평성에도

커다란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서비스 시행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해 줄 것과 도시철도 무임손실 보전을 위해 입법발의 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와 국철에 상응하는 손실보전 방안 마련을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나. 기타사항: 없음

4. 이 송 처

가. 국 회 : 국회의장

나. 정 부 :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노인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

서울의 도시철도는 1974년 8월 1호선 개통이후 현재까지 43년 이상을 서울시민의 발이 되어 일일 670만명 이상을 수송하는 명실상부한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보편적 교통수단에 대한 무임 손실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5년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손실은 전체 당기순손실 85%에 해당하는 3,15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무임승차 이용비율도 2010년 12.9%에서 지난해 14.0%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인구의 경우 통계청 인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에서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2015년 기준 1,267,563명으로 전체인구의 12.3%로 지난 2005년 7.1%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15.0%, 2030년 23.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2030년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대비 1.75배 증가해 현재와 같이 도시철도 운송기관이 무임수송 운영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수송에 따른 연평균 운영손실액의 50~70%를 국비로 보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협약을 통해 민간사업자인 코레일

공항철도와 신분당선에 무임수송 운영손실 전액을 보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와 동일 노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 1·3·4호선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차별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 및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서비스 시행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다해 줄 것과 서울시 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영손실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 상응하는 보전 방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6.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